

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37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8. 9. 11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농업·농촌기본법」이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조문을 정비함(안 제2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(3)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중 “「농업·농촌기본법」 제12조”를 “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25조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후계농업경영인”이라 함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「농업·농촌기본법」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25조 ----- ----- -----.</p>

관계 법령

I. 현행조례 근거법령

□ 농업·농촌기본법

제12조 (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) ①농림부장관은 미래의 農業人力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農業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者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영농정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.

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자금지원, 농업기술·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□ 농업·농촌기본법 시행규칙

2조 (후계농업인의 육성) ①농업·농촌기본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농촌에 정착할 뜻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.

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농업의 기술 및 경영에 관한 교육 기타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.

③후계농업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·교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.

II. 개정조례(안) 근거법령

□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[전부개정 2007.12.21 법률 제8749호]

제25조 (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) ① 농림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(後繼農業經營人)으로 선정하고 영농정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.

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자금 지원 및 농업 기술·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부칙 <제8749호,2007.12.21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농업·농촌기본법」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.

□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

[전부개정 2008.6.2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호]

제2조(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) ①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5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농촌에 정착할 뜻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.

②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영농정착 및 농업경영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농업의 기술 및 경영에 관한 교육, 그 밖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방법, 교육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1. 후계농업경영인의 신청·접수 및 구비서류, 선정 절차 및 기준
2. 후계농업경영인 사업계획,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
3. 농업경영 관련 컨설팅 및 농업투입자재 구입 등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
4. 보조·융자의 상한·비율 및 조건 등 지원에 관한 사항
5. 보조·융자의 취급 및 사후관리기관에 관한 사항

부칙 <제12호,2008.6.20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...

제3조(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본다.

심 사 보 고 서

2008년 10월 2일

산업건설위원회

I. 심 사 경 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년 9월 11일 대전광역시장

2. 회 부 일 자 : 2008년 9월 12일

3. 상 정 일 자 : 제1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(2008. 10. 2)

상정, 심사, 원안가결

II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경제과학국장 이택구)

1. 제안이유

「농업·농촌기본법」이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조문을 정비함(안 제2조).

Ⅲ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이환구)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.

조례안 세부내용을 보면,

- 안 제2조에서는 인용조문을 정비함.

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,

- 본 개정조례안은 2007. 12. 21 「농업·농촌기본법」이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으로 전부 개정되어 2008. 6.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,
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되는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,

○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그 내용과 목적사업이 유사하므로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에서도 통합운용을 권고한바 있으며,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의회에서 지적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,
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한 내에 두 기금을 통·폐합하여 개별기금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인력 및 예산남용을 방지하고 기금 통합운영에 따른 자금 활용 극대화로 기금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IV. 질의·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생략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